

【특 집】

학술회의 토론문

일 시 : 2005년 12월 10일(토) 10시-13시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사 회 : 남효순(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금숙(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수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진선미(변호사)

한 인 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억울한 인권”을 풀어내는 법 — 이태영의 삶

오늘의 초점은 “이태영”입니다. 흔히 이태영 변호사로 말하지만, 사실 이태영은 변호사라는 특정직을 훨씬 넘어선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이태영”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UN이 정한 ‘인권의 날’인데 이 12월 10일, 그것도 토요일에 청중들을 불러 모으기란 요즈음 힘든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태영이란 이름은 연말, 토요일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태영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은 우선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 호소력의 원천 중의 하나는 그의 글이 관념적이지 않고, 말하듯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해 있습니다. 늘 상대와 대화하듯, 그리고 호소하듯 글을 쓰고 있기에 지금도 실감이 생생히 전달됩니다. 문제의식은 정확하고, 관련지식은 풍부하고, 대안은 구체적입니다.

그의 글도 좋지만, 저는 이태영의 육성과 삶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태영의 “육성”은 정말 여러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여성지들은 광고로 꼭 차 있고 어디가 광고이고 어디가 본문인지도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문득 시선이 머물러서 끝까지 읽게 되는 것이 이태영의 대

담 그리고 에세이였습니다. 이태영의 발언과 대답은 살아 움직이는 언어로 표현되는 법여성학(living feminist jurisprudence)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의 법여성학, 혹은 여성학 일반은 서구개념의 번역학에서 벗어나 이 땅의 여성의 언어로, 이 땅의 여성의 감각으로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태영이 남겨놓은 육성의 재구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현아 교수님의 글의 마지막에 이태영이 “(그날이 오는 날 한국의 가족법개정운동사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투를 빌려서 “한국의 여성학, 법여성학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 써야 할 것”이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조금 확대하자면 한국의 법학,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전반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이 써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태영의 변론, 육성보다 더 쉽게 감동에 전염되는 것은 이태영의 삶 그 자체가 지요. 여기 책자의 연보에는 “제1회 자랑스런 서울대인 선정”(1991)의 기록과 “제1회 자랑스런 이화인상”(1995)의 수상경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 두 곳에서 그것도 “제1회”를 수상하는 것은 더 이상의 광영이 없는 본인과, 가문의 대기록일 것입니다. 저는 무슨 수상을 많이 했다고 찬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태영만큼 국제사회의 저명한 상을 그렇게 많이 수상한 한국인은 여태껏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태영은 국제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에는 분명히 확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영의 삶은 이태영 스스로 슬하하게 슬회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랑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슬한 장애의 돌파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중 남성만 교육시키는 풍토에 도전하였고, 여성=가사교육의 제한점을 돌파했으며, 해방후 첫 여성법학도였으며, 첫 여성고시합 격자였고, 첫 판사의 길이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좌절된 뒤 첫 여성변호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의 중요한 업적 역시 전인미답의 경지를 열어갔습니다. 이러한 이태영의 삶은 (여성)법조인들에게 지속적인 자극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모델 이미지가 되기에 족했습니다. 가령 공부할 기회가 좌절되었다가 중년에 이르러 대학을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 여성이 있다면, 그에게 이태영의 삶은 더없는 희망의 원천이 되는 셈이지요. “이태영처럼”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모토입니다. 이렇게 법조인 중 법조인을

넘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친숙함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은 달리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태영 앞에 놓인 장애물은 이태영에게 영광을 안겨주기 위한 연소 재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법률가들이 남겨놓은 글과 삶 중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 책으로 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태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태영의 업적은 국내외로부터 이미 수많은 수상을 통해 생전에 널리 인지되었지만, 아직도 남성 법률가 세계에서는 의외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긴 생애에 걸쳐 이토록 투철하게 법과 인권의 가치를 고양시킨 법률가는 거의 유례가 없다고 평가받을 만하다.¹⁾

여기서 마지막 문장, “거의 유례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잠시 해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현대사를 수놓은 명논설과 그 뒤에 있는 법률가 인간상을 정리하면서 생애 내내 위대하다고 평가할 만한 분은 거의 없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실로부터 초연할 수 없는 세속적 직분으로서의 법률가의 활동을 통해 순결한 위대성의 영예를 얻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영예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인물로 가령 조영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영래가 법률가로서 활동한 것은 불과 3~5년 정도이며, 43세의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²⁾ 조영래가 지금껏 살아있다면 파란 많은 한국의 사회와 정치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실지, 그 위치 자체가 주는 다양한 평가와 오명부여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가의 전기를 보다 보면, 40세 이전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세속적 유흥 앞에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누구보다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경우, 일제시대의 변호사 경력과 해방 이후 사법부 수장으로써 누구보다 모범적인 법률가상을 보여주었습니다.³⁾ 그러나 본 양현아 교수님의 발표에서 인용된 김병로 대법원장은 남녀평등한 가족법에 대한 지지를 구

1)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 2004, 49쪽.

2) 안경환, 조영래 평전, 강, 2005 참조.

3)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 민음사, 1988.

하는 이태영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친족상속편 초안의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⁴⁾고 잘라 말하여, “눈물이 아닌 핏물을 쏟”게 하는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그에 비해 이태영의 경우 그 사회적 활동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놓인 장애가 지속적인 긴장과 돌파를 요하는 것이었기에, 쉽사리 세속잡사나 세속적 자리와 타협할 수 없게 만들었던 측면이 역설적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는 성경 말씀(로마서 8:18)이 과연 맞지 않은가요.

다음에 생각해볼 것은 여성주의 법률가(feminist lawyer)로서의 이태영입니다. 제가 언제 읽었던 이태영의 저서 중에 「차라리 민비를 변호함」이라는 제목이 언뜻 떠오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보통 환관 탓, 여자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남성-학자-관료의 눈에서는 국왕의 총애를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이 가장 밉기 마련이지요. 중국사에서는 왕조가 망할 때는 말희, 포사, 서시, 양귀비 등 미인이 등장합니다. 경국지색(傾國之色), 즉 나라를 기울게 한 미색이지요. 청조말에는 서태후가 등장하고, 조선말에는 민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여성들에게 아무 권리도 인정 않던 조선조에서, 유독 나라 망친 남성들은 놔두고 모두가 민비 탓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민비는 정말 변호되어야 할 인물이지만 남성의 관점에서는 (일제로부터 만들어진) 민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의없이 수용했던 편이지요. 민비에 대한 재평가는 민비 개인에 대한 복권 차원을 넘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영역임에 분명합니다. 이태영의 민비 복권은 그 점에서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관점을 대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한갓 해석가에 머무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온몸으로 고쳐나간 분입니다. 이태영의 여성주의 실천법학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첫째, 반여성적인 제도와 현실을 바로잡는 노력입니다. 1948년 헌법은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영역에서는 여성차별적 내용을 “순풍미속론”의 이름으로 유지되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발도 거의 제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변호사

4) 이태영,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1992, 46쪽.

가 되자마자 바로 가족법 개정에 나서게 됩니다. “사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찌하여 공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사생활에서 평등권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공법상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늘 신분법에서 평등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한 헌법상의 남녀평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⁵⁾고 주장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에 나섭니다. 1953년의 이 말은 지금 보아도, 언제 보아도 명언 중의 명언이라 할 만합니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여성학의 공/사 구분론의 폐기에 견주어보아도,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압도하는 느낌입니다.

이태영의 반세기에 걸친 가족법개정운동은 1990년까지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를 제외하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뒤 동성동본불혼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⁶⁾ 호주제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⁷⁾을, 그리고 마침내 입법⁸⁾으로 폐지되는 대장정을 밝게 됩니다. 이러한 반세기

5) “친족상속편 초안 및 심의요강에 대한 전국여성단체연합회 의견서(1953)”, 이태영, 앞의 책(1992), 398쪽.

6)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내지13 전원재판부: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7) 헌법재판소 2005.2.3.선고 2001헌가9, 10, 11, 12, 13, 14, 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중략)…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8) 2005.5.31. 법률 제7427호

[개정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의 가족법 개정운동의 중심에는 이태영이 확고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둘째, 이태영의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많은 활동을 통해 여성인권운동을 전개합니다. 광배희 소장님의 발표에서 인용되어 있지만, 너무 구절이 좋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법률구조운동은 법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보다는 인권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여권운동이지요. 이는 보다 억울한 인권, 보다 비참한 인권, 보다 가난한 인권, 돈 없으면 법을 통한 자기구제가 불가능한 약자 계층의 인권운동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층의 대집단이 바로 ‘여성’이라는 의미이지요.”⁹⁾

이태영이 누누이 말하듯이, 이태영은 그냥 인권이란 이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 없어 법률구조를 하는 통상적 법률구조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억울한 인권”이란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서럽다고 해서 억울함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먼저 상담소에 오는 여성은 자신의 법적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합리적 피해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상담소에 와서 우는 여인들”¹⁰⁾입니다. 얻어맞고 빼앗기고 버림받고도 호소할 곳도 없는 여인들입니다. 이태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주요내용] ①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②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③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④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9) 신동아, 1975/9, 광배희 발표문에서 재인용.

영은 “도대체 그들은 왜 우는 것이며 누가 그들을 울게 만드는가”하고 자문합니다. 부인이 억울하면 이혼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 여성들은 “이혼을 감행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열악함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겠지요. 그 울음에는 합리적 해결책은 멀리 있고,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는 일이 선결무엇을 것 같습니다. 이태영이 그냥 같이 울어주는 데 머무른 분은 물론 아닙니다. 1968년 서울대 법학박사논문으로 제출한 <한국이혼연구>는 억울한 눈물을 소재로 방대한 상담자료와 판례자료를 수집하여 살아있는 법사회학적 연구와 입법론적 제안을 제시한 역작입니다.¹¹⁾ 이러한 활동가와 연구자를 겸비한 역할은 **눈물의 법, 억울함을 푸는 법, 공감의 법**의 한 방향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후학들이 한국적 법학, 법여성학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치있는 유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내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 중 첫째 부분, 즉 공적·제도적 영역에서 가족법개정운동으로 대표되는 과제는 이제 일단락되

10) 이태영 선생 유고변론집,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9, 173 쪽.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여인, 시부모의 학대와 이간책으로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 자신이 낳은 자식을 빼앗긴 여인,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폭력을 견뎌야 하는 여인, 남자에게 속아 재산까지 빼앗기고 버림받은 여인, 사랑해서 동거했으나 동성동본이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우는 여인, 그러자 남편의 사랑도 돌아서 버렸다고 우는 여인…”

11)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 법사회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대출판부, 1968. 서문에서 이태영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본서는 이혼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이다. 기왕에도 학자들의 이혼연구가 적지 않았으나 주로 실정법을 기초로 한 법해석학적 연구 내지는 법제도사적 연구에 치중되었으며 이혼판례연구에 있어서도 판결이유의 법해석학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혼문제가 법률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라면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본서에서는 저자가 다년간 법원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이혼판례 1,350건과 조정사건을 주자료로 하고 가정법률상담소가 10년간 취급한 이혼사건을 부자료로 하여 이혼실태의 일부를 파악하고, 이로써 전체를 추론한 다음 이혼의 한국적 특징을 발견하려 한다. 다음으로는 이혼 현상에 대한 현행이혼법규의 적용이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가져왔는가를 측정하고 현행법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그것이 곧 새로운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 이같이 한국이혼연구는 그 방법론과 자료수집에서, 통상의 박사논문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치밀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법학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학위논문을 찾아보기란 지극히 힘들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집단,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태영의 후광과 유산은 계승되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을 솔하게 갖고 있지만, 후광이 크면 영광의 그늘도 짙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얼마나 이태영과 달라야 할까, 얼마나 쇠신해야 할까 하는 고민스런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이태영과 다소간 일체감을 느꼈던 세대는 고령화하고, 이제는 이태영을 모르는 후인들에게 이태영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하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가족의 현단계는 이태영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와 순식간에 달라져 버린 점도 있습니다. 조은희 교수의 발표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태영의 「한국이혼연구」에는, 여성에게 “일부종사와 아내의 미덕이라는 유교적 교훈이 강요되어 왔으므로 이혼을 감행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적 상황과 여성이 경제적 무능력자인 점”¹²⁾이 한국의 낮은 이혼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교적 교훈이 사라진 때문인지, 여성의 사회적 처지가 나아진 때문인지, 여성의 경제능력이 향상되어서인지 몰라도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자녀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¹³⁾ 가정법률상담소에 오는 여성들도 다른 태도로 올 것 같습니다. 앉자마자 울기부터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 높은 이혼율과 낮은 출산율의 시대에는 상담소는 어떤 해결책을 제안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 바람 중의 하나는 이태영의 모든 것(저작, 논문, 에세이, 대담 등)을 담은 전집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누구나 그 중에서 읽을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12) 이태영, 앞의 책(1968), 30~33쪽. 이혼율이 낮은 이유로 이태영은 ① 사실혼의 해소를 산입하지 않은 점 ② 夫의 축척이 가능하다는 점 ③ 처가 경제적 무능력자인 점 ④ 자녀와의 별거가 고통인 점 ⑤ 재혼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⑥ 개인주의 사상이 발달하지 않은 점 ⑦ 가족제도적 윤리관 등을 지적하고 있다.

13) 통계청 자료(<http://kosis.nso.go.kr/>)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전인 1995년에는 혼인 398,484건, 이혼 68,279건으로 인구 1,000명당 1.5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2004년에는 혼인 310,944건, 이혼 139,635건으로 인구 1,000명당 2.9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입기간 동안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수는 1.23명으로 일본 1.33명, 미국 2.04명, 프랑스 1.87명, 영국 1.66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것이 이태영의 삶이고 글이고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 (가족법이 상당히 개정되었는데 그와 관련) 현재 상담소를 찾는 이들의 현황에 관하여:

성평등·부부평등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지속해온 가족법 개정 운동의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 법적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져 여성, 아내의 권익은 상당히 신장되었으며, 법적인 권리를 지키려는 의식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의 사연을 보면 대체로 20% 정도는 여전히 현행 법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억울한 사연들이고, 80% 정도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는 내용들로 파악된다.

2. 앞으로 상담소의 과제에 관하여:

첫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상담소의 목적 사업인 법률구조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 전국 30여개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준비 중인 지부를 확대 설치하여 각 지역에서 법률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법원의 지원이 설치된 전국 지역에 상담소 지부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올해 가족법 개정운동은 반세기 만의 호주제 폐지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것으로 가족법 상 완전한 성평등·부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민법상 철저한 성평등·부부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상담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차적으로 이혼제도의 개선과 부부재산제의 개정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

셋째, 가족법 개정과 아울러 가족정책에 있어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제안도 지속할 것이다.

넷째, 가족법 개정과 관련하여 남성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적지 않다. 가족법 개정의 본뜻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평등과 가정 내 민주화에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와 여성의식의 성장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지체현상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이 되면 곧 북한지역에도 상담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소에서는 북한의 민법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북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토대를 닦기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3. 1990년대 가족법 개정 이후 이태영 박사에 관하여:

가족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태영 박사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발언을 한 것은 1991년 3차 개정 가족법의 시행을 앞두고였다. 이에 앞서 1989년 가족법 개정이 있는 후 ‘500년 묵은 인간차별 전통의 벽이 무너졌습니다’고 했으며,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살 것 그리고 ‘함께 사는’ 인간관계를 스스로 훈련하여 진정한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도록 하고 ‘권리 위에 잠자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그 밖에 이태영 박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 전시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미 상담소는 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담소의 새로운 회관이 완공되면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이태영 박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전시할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금숙(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의 토론은 조은희 교수의 “이태영 변호사의 ‘한국이혼연구’에 대한 재조명”에 관한 것이다. 조은희 교수의 의견은 주로 “III. 이태영 변호사의 이혼대책에 대한 재조명”에 나타나 있다. 조은희 교수가 여러 가지로 재조명한 것을 대부분에 관하여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에 몇 가지만 토론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협의이혼에 관하여: 이태영 박사가 협의이혼을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혼을 인정하고, 다만 법원이 이에 개입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박사가 주장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 부분의 중요성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생각건대 최근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협의이혼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재판상이혼제도만 인정하는 영국의 경우 이혼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최근의 보고가 있다.

2.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청구 문제를 과실책임의 원칙과는 별도로 주장한 이박사의 견해를 높이 평한 부분에 관하여는 동의한다.

3. 이혼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 조은희 교수는 이박사가 이혼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한 것은 찬성하지만, 이박사의 이론적 근거는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토론자의 생각에는 이박사의 논문에서 지적한 “이혼피해자의 생활보장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여후적 효력만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보장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으로서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상속의 근거에 대하여도 ‘사회보장설’이 유력한 견해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이박사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매우 탁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박사의 논문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이혼의 원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박사의 이러한 연구와 후속 연구 및 활동은 사회에 가정폭력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가정폭력에 관한 일련의 법률들의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은희 교수는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양현아 교수는 호주제에 관하여 주로 논하였지만, 이박사는 동성동본간 혼인자의 신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주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므로 이를 아울러 논하였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본다.

김수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오늘 이태영 변호사를 재조명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 이태영 변호사님에 대해서 저 자신 잘 몰랐던 부분들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여성을 역사 속에

서 기리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군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여성사와 문화사 방면에서 식민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토론자 분들 중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유일한 듯 하군요. 이렇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을 토론자로 삼으신 것은 법 바깥의 부분, 또는 법과 사회의 경계에서 발언하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현아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금숙 교수님께서 이태영 변호사님의 명언을 모아 소개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재미있고 중요한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는 소개를 해주지 않으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옥살이 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다음날부터 나는 가난한 살림 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소처럼 부지런하게, 힘차게 일했어요. ‘소’라는 내 별명은 그 때부터 얻은 것이예요.”라는 대목입니다. 미련한 소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힘찬 ‘소’처럼 평생을 살아왔다! 저는 한국의 일반 여성들을 단순히 억압받고 희생자 여성으로 간주하고 이태영 변호사님 같은 여성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여성으로, 그들을 ‘위해’ 일한 여성으로 대립시키는 것에 이의를 느낍니다. 물론 이태영 변호사님은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이 일제 시대 태어나 해방 후 가난과 정치적 격동을 딛고 ‘소처럼 부지런하게, 힘차게’ 일한 한국여성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태영 변호사님이 자신의 일생을 ‘소’에 비유하여 표현하신 것은 한국여성으로 자신을 표현한,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유명세를 외조 잘하는 남편의 덕으로 보는 세간의 생각에 일침을 놓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태영 변호사를 어떤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 교수님의 지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 교수님의 글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영 변호사를 사회개혁가이자 사상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둘째, 이태영 변호사가 시작한 가족법개정운동을 한국의 ‘자기구성적 페미니즘’의 과정으로 조망하는 것, 세 번째는 이태영과 그 세대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여성주의를 통해 식민주의적 역사쓰기를 극복할 과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 교수님은 이태영 변호사를 사회운동가, 사회개혁가이자 사상가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머리에 이태영 변호사님을 단순한 희생자의 대변인이 아니라 힘차게 고난의 한국 역사를 짊어져왔던 한국 여성의 하나로 보고자 했습니다만, 양 교수님은 이태영 변호사를 ‘여성법률가’가 아니라 사상가로 일컬었습니다. 흔히 유명한 여성에 대해 여류시인, 여류미술가처럼 흔히 ‘여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역사에 족적을 남긴 여성들을 일컬을 때 운동가나 법률가 같은 말은 써도 ‘사상가’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 교수님은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의식하여 일부러 ‘여성’이라는 접두어를 빼 채, 법률가, 사회개혁가, 사상가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법개정운동이 한국의 ‘자기구성적 페미니즘’을 보여준다는 테제입니다. 양 교수님의 글은 이태영을 대표로 하는 1세대 여성주의가 ‘식민지적 질곡과 그에 접목된 가부장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근대법학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들이 1980년대 ‘실질적’ 여성이익론을 내세운 2세대 여성주의자들과 연합하여 가족법을 개정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유산과 ‘전통’론을 비판한 시민사회 세력들이 힘을 합하여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법개정운동을 한국 페미니즘의 ‘자기구성적’ 실천의 산 역사로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구성적’이라는 말은 양 교수님이 주의깊게 선택하여 만든 용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자기구성적’이라는 말은 가족법개정운동이 한국여성들의 자생적인 고통호소에서 출발하여, 그 고통이 한국여성의 존재방식을 규정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숙이 인식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바로 한국여성을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를 운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이태영의 1세대든, 1970-80년대의 2세대든 그들이 사용한 여성주의 이론의 도구는 서양의 근대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느낀 문제는 서양의 이론으로 잘 포착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합리성과 휴머니즘 같은 언어의 바깥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겠죠.

호주제 폐지에 이르는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주의가 식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양 교수님의 세 번째 테제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역사기술이 여성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구성적’ 여성주의가 식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양 교수님은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 1세대 운동시기, 1980년대 주로 맑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여성주의자들이 등장하여 호주제를 제외한 가족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한 시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태영 사후에 시민사회 일반으로 운동의 대의가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낸 시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시기의 상징적 이익론 대 실질적 이익론의 구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시기 운동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인 ‘식민지 유산론과 전통비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양 교수님은 이태영세대가 호주제의 중대성, ‘신분관계’가 가지는 바의 중대성을 뿌리깊이 인식한 데 비해 2세대는 그것을 단지 실제생활을 설명하는 데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명목’에 불과한 ‘전통’이라고 해석하여 이 문제와 투쟁할 필요를 크게 못 느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2세대가 말하는 명목론이 포스트식민지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관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1980년대까지 일반인과 운동세력에게 법이란 현실세계에서 이뤄지는 논리와 동떨어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은 그동안 한국의 법학자와 법원이, 가족이 사적세계이자 관습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논리를 생산하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법은 공적 세계에서조차도 예컨대 시민권과 정치권 자체도 말 뿐이었지 현실에서 이를 보장해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맑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운동 세력에게 법은 부르주아지의 계급지배의 합리적 도구이며, 자유주의 계약론에 입각한 계급 중재자로서의 국가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에 법을 무언가 사회변화의 기반으로 사고하는 것을 경원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이 지배의 편의에 봉사한다는 관념을 2세대 여성운동세력도 공유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호주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분관계규정을 단지 ‘명목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¹⁴⁾ 식민지 경험을 매개로 서양의 정치제도 및 사상이 동아시아 사회로 들어오고 난 뒤 그것이 현실을 규제하는 원리로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겪어온 한국사회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는 여전히 질문 거리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제를 폐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이념적 동인이었던 ‘식민지유산론과 전통비판’ 문제입니다. 양 교수님은 이 식민지유산 문제에 대한 이념적 자원을 제공하신 분으로, 일제시대에 성립된 호주제가 전통의 왜곡이 아니라 식민주의적 전통의 생산이었음을 탁월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식민주의적 분석보다는 대일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주제를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대해 호주제는 일제가 이식했다는 논리가 유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담론투쟁 과정이 전통의 구성과정을 이해시킴으로써 그것의 해체와 재구성을 사고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전통’을 ‘불건적 인습’ 아니면 일제가 ‘이식’한 바의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단순한 극복 대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포스트호주제 시대에 전통의 재구성이 당면의 과제로 떠오르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가족과 젠더정치의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앞으로 이 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안은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라는 부계계승의 신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여성에게 무엇이 올 수 있는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형성인가? 우리는 어떤 ‘개인’을 원하는가? 사적 가부장제가 형성되고 착한 아버지가 나타날 것인가? 부계와 병존할 모계계승제의 기초가 될 것인가? 양 교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 그래서 1980-90년대 초 부모성 함께 쓰기라는 문화운동이 다른 한편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법은 어차피 실질적인 현실규제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의 반영으로서 말이다.